

부산광역시 사하구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 1. 제안사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처분을 통한 건전재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개정하기 위함

## 2. 주요골자

- 가. 물품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구 본청 각 실·과장을 물품운용관으로 지정함(안 제2조)
- 나. 기증품 취득시 사용용도와 목적 등에 대해 부산광역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규정함(안 제11조)
- 다. 기타,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인용법령 조문과 용어 변경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동법 시행령」
- 나. 입법예고 : 2006. 3. 27 ~ 4. 17(20일간) ▷ 제출의견 없음

## 4. 검토의견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이 공포됨에 따라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처분을 통한 건전재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물품관리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 물품관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재무과장을 물품관리관으로, 실·과장을 물품운용관으로 지정하는 내용이 신설되며,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를 받은 경우 물품관리관의 사전 협의를 거쳐 부산광역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득하여야 하는 사항을 신설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조문과 용어를 변경하는 사항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나

- 동 조례 제9조제1항에 “주관과장이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물품매입 요구를 한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지방재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2조 및 제113조의 규정에 의거 정수 책정물품에 포함되었는지의 여부와 물품수급 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의 여부를 심사하고 정수관리대상인 물품에 대하여는 의회의 의결을 얻어 물품을 매입토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 1993. 9. 23 당시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정수관리의 대상인 물품의 취득·처분에 대하여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조항(제113조제2항)이 삭제되었으나, 현재까지 조례개정 절차를 밟지 않고 방치한 것은 반듯이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임
- 따라서 동 조항은 별첨 수정안 대비표와 같이 “물품수급 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토록 하여야 한다”라고 수정 가결함이 옳을 것임